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00회 제2차 정례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

2023. 11.

김정희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## 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 : 김정희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 
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#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 ·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 
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  
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 
해소하고자 합니다.

###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에는 위기가구 발굴 신고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5조에는 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에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 
포상에 관해 규정하였고, 안 제7조에는 포상제외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.

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

-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완결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,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

-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기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【김정희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3130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11. 3.

발의자: 김정희 서보영 박종길  
장호섭 정순옥 최홍린

이선주 이진환

### 1. 제안이유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위기기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(안 제3조)
- 위기기구 발굴 신고에 관한 규정 (안 제4조)
- 위기기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 (안 제5조)
- 위기기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 및 포상제외 규정 (안 제6조 ~ 제7조)

### 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비용추계 : 비대상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위기가구”란 경제적·신체적·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,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기가구 발굴 신고)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·우편·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다.

제5조(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)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.

- ② 발굴된 위기가구에게는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③ 발굴된 위기가구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제6조(포상)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신고된 가구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- ③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,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포상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.

1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
2. 제6조제2항 각호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제보한 경우
3.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붙임 1

## 관계법령

### □ 사회보장기본법

제9조(사회보장을 받을 권리)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(이하 “사회보장수급권”이라 한다)를 가진다.

### 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·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
제9조의2(위기가구의 발굴)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(이하 이 조에서 “위기가구”라 한다)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 · 법인 · 단체 · 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
  2.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
-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4조(민관협력)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 · 법인 · 단체 · 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,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· 군수 ·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(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 · 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)에 관계 기관 · 법인 · 단체 · 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 · 법인 · 단체 · 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.

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